

제209조제7호 중 “제54조 또는 第168條”를 “제168조”로 한다.

제211조제3호 중 “第189條의4第8項”을 “제189조의4제9항”으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로 인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총회의 사후승  
인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회사  
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증권거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증권회사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

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도 일정기간  
동안 증권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사회의 결의로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  
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法律 第7763號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  
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과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북회담대표”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대북특별사절”이라 함은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

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에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재정상의 책무)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 3.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①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통일부장관은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 참석, 남북합의서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남북회담대표가 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남북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2인 이상의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 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 3.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 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행위

제18조(지휘·감독 등)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감독을 한다.

②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별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

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는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본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간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 남한과 북한간의 기본적인 관계, 국가의 책무,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한과 북한의 관계(법 제3조)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남북간 거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함.

나.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법 제6조 내지 법 제11조)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

진’ 등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로 규정함.

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법 제13조 및 제14조)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발전의 중·장기적인 비전제시를 위하여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법 제21조)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근거를 부여하고, 특히 국회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도록 함.

마.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법 제23조)

남북합의서는 남북간에 한하여 적용되며, 남북관계의 특성상 대통령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법제처 제공>